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39호 2016. 2. 26(금)

공 고

○ 사천시 공고 제187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439호(2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6 - 187호

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

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○ 어업면허 내역

면허번호	어업종류 (어업방법)	어장 위치	면적 (㎡)	면허 기간	어업권자		비고
					주소	성명	
사천 제56호	패류양식 (살포식)	서포 비토	100,000	'16.03.07. ~'26.03.06.	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873	곽정돌 (3/5)	사천 제5호 재개발
					경남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654	박영욱 (2/5)	

2015년 2월 18일

사 천 시 장

사 천 시 공 보

제439호(3)

어 업 면 허 증

성 명 광 점 들 외 1명(박영욱)
주민등록번호 461215 - 1*****
주 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873

1. 면 허 번 호 : 사천양식 어업면허 제 56 호
2. 어업의 종류 : 패류양식어업
3. 어업의방법 및 양식시설량 : 살포식
4. 어장의 위치와 구역 :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지선
(별지 도면과 같음)
5. 어 장 면 적 : 100,000m²
6. 포획물채취물 : 양식어업 제외
7. 포획·채취방법 :
8. 어업의시기 : 1월 1일 부터 12월 31일
9. 면허의 유효기간 : 2016년 3월 7일 부터 2026년 3월 6일까지(10년)
10. 제한 또는 조건
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“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”에 의거 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
11. 등록일자 : 2016 년 2월 18일

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면허합니다.

2016년 2월 18일

사 천 시 장

사 천 시 공 보

제439호(4)

공 유 자

(사천양식 제 56 호)

주 소	성 명	주민등록번호	지분	비고
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873	곽점돌	461215-1*****	3/5	
경남 남해군 서부로 654	박영욱	620204-1*****	2/5	